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1호)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4호)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0호)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6호)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2호)

검 토 보 고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1호)	1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4호)	1
3.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0호)	1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6호)	1
5.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2호)	2
II . 제안이유	2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1호)	2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4호)	3
3.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0호)	4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6호)	5
5.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2호)	5
III . 주요내용	7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1호)	7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4호)	8

3.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0호)	9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6호)	11
5.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2호)	12
IV. 검토의견	13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13
가. 제정안의 취지	1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13
다. 관계 부처 의견	15
라. 제정 소요 추계	21
마. 법률 제정 필요성	21
2. 조문별 검토	29
가. 목적 및 정의	29
나.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34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라. 위원회의 설치	40
마.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5
바.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조세의 감면 등	49
사.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54
아. 환수 및 중복지원 제한	60

자.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64
차. 부칙	67

I. 제안경위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1호)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6. 17.

다. 회 부 일 : 2024. 6. 18.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4호)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6.

3.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0호)

가.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2.

다. 회 부 일 : 2024. 7. 3.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6호)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5.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2호)

가.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1호)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에너지 비용,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4호)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농약·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비료, 농약 등)는 전년 대비 27.6%나 급등하였는데, 특히 20kg 요소비료 가격은 2022년 2만 8,900원으로 2019년 8,600원에 비해 3.4배 급등하였고, 소·돼지·닭의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에 비해 35% 정도 상승하였음.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필수농자재로 선정된 품목이 폭등할 경우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록 하는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0호)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6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 농업인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료·유류·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5.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2호)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

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민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2년 기준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실제로 지난 10년간 농업경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 농약, 사료, 인건비 부분에서 40~70%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수적인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필수농자재로 분류된 물품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임.

Ⅲ. 주요내용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1호)

- 가. 이 법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경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4호)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수 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0호)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마.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6호)

-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5.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2호)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가. 제정안의 취지

5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이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각 제정안은 농가가 지출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 농가의 소득 보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안됨.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5건의 제정안 제명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문대림의원안),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윤준병의원안),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김한규의원안),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어기구의원안), 필수농자재 지원법(이개호의원안)임.

문대림의원안은 4장, 13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윤준병의원안은 3장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김한규·어기구의

원안은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이개호의원안은 13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비교]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법안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 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 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등	제2장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등			
제5조(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제6조(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제8조(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제7조(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의 설치) 제8조(위원회 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농업경영비 실태조사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7조(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제3장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등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7조(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 지원)	제5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기준)	제5조(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제8조(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제9조(자금 지원 등)				
제1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1조(조세의 감면)				
	제8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10조(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제8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11조(환수)	제9조(환수)	제10조(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1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제3장 벌칙			
제13조(벌칙)	제14조(벌칙)	제12조(벌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다.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투입재 보조금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WTO 협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가격의 인상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급망 위기 시 원자재의 원활한 유통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조

화로운 연계를 위한 경제안보품목 선정, 계획수립, 조기경보체계 운영,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술개발·비축관리 지원 등을 규정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정부 조치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음.

아울러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유류비 등을 지원¹⁾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26)²⁾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제정안 마련에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안 제6조 및 어기구의원안 제5조) 국고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것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충됨.

(문대림의원안 제6조 및 윤준병의원안 제7조) 농자재 수급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규정은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사료관리법」에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있어 규정의 실익이 낮음.

1) <농업 경영비 부담완화 지원 정책>

- ◆ (비료)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보조('22년 1,801억원, '23년 1,000, '24년 288)
- ◆ (사료) 저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22년 1.5조원 '23년 1조원 '24년 1조원, 연이율 1.8%)
- ◆ (유류비)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22년 151억원, '24년 70),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및 일몰기한 연장('22~'23년 → '24~'26년)
- * 과수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노지용 난방기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 등
- ◆ (전기료 인상 완화) '23년도에 산업용 등 요금은 21.1원/kWh 인상하였으나, 농사용은 3년간 분할 적용 중('23년 8.2원, '24년 6.5, '25년 6.4)
- ◆ (효율 제고) 시설농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174억원, 51호) 및 에너지절감 시설(80억원, 1.2천호) 지원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원자재 공급망의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4.3.26. 개정, 신정훈 의원 발의).

(문대림의원안 제9조 및 제10조) 농가에 인건비·고용보조금을 직접 보조하는 것보다는 농업 근로인력 공급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임금 수준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

또한, 교육훈련보조금,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및 스마트농업 설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의 수행,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할 실익이 낮음.

2) 기획재정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4.3.26 개정)」으로 농가 경영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별도 입법은 불필요함.

그간 유가 상황 및 비료·종자 등 경영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농자재 비용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동 법률안대로 제정 시 필수농자재 지원이 상시적·항구적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지원 기준에 해당 시 의무 지원으로 귀결될 수 있어 경직된 재정 운용과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됨.

또한, 정부가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 예산을 확

대하고 있는 점, 사료구매자금 등 다양한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행정안전부

(문대림의원안 제5조·김한규의원안 제6조·윤준병의원안 10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³⁾에서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제5조 및 김한규의원안 제6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와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심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면 별도의 위원회 설치하지 않고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함.

또한, 윤준병의원안 제10조의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⁵⁾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별도의 위원회 설치하지 않고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함.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재정 소요 추계

5건의 제정안 각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25~'29) 필수농자재 등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을 추계하였음.

이에 따르면 문대림의원안 3조 1,976억원, 윤준병의원안 9조 6,374억원, 김한규의원안 2조 8,751억원, 어기구의원안 6조 8,580억원, 이개호의원안 3조 75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소요액 추계]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추계 대상	비료·사료·유류·전기료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	비료·사료·농약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	비료·사료·농약·농업기계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	비료·사료·농약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	비료·사료·유류·농약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
소요액	3조 1,976억원	9조 6,374억원	2조 8,751억원	6조 8,580억원	3조 755억원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재작성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시점에서 필수농자재 등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필수농자재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추계하고 있음.

이 경우 향후 5년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은 7,200만원으로,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66억 2,000만원으로 나타남.

[향후 5년간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추계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비용	필수농자재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운영비용: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운영비용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운영비용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운영비용
소요액	7,200만원				
추계 대상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비용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비용	-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비용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비용
소요액	66억 2,000만원		-	66억 2,000만원	

※ 자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 재작성

마. 법률 제정 필요성

5건의 제정안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이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실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급등하였고 2023년 하락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 및 2020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제유가(두바이)(\$/배럴)		63.5	52.3	69.4	96.4	82.1
유연탄(전력용연료탄)(\$/톤)		78.1	61.0	141.8	360.1	172.8
천연가스 수입가격(\$/톤)		505.4	390.1	550.8	1053.5	781.9
비료 원료	요소(\$/톤)	313	289	445	813	265
	인산이암모늄(\$/톤)	380	326	552	910	455
	염화칼륨(\$/톤)	350	296	317	776	297
	암모니아(\$/톤)	289	272	546	948	330
사료 에너지원	밀(\$/톤)	181.8	201.9	258.2	330.3	237.2
	대두박(\$/톤)	337.3	353.8	422.2	487.8	485.0
	옥수수(\$/톤)	151.7	143.3	225.3	272.8	222.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에 따라 면세류, 비료, 사료의 단가도 2019년 및 2020년보다 급등하였고,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도 상승⁶⁾하고 있음.

[농자재 등 비용 증가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면세유 (원/l)	경유	829	688	829	1,396	1,205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등유	802	675	783	1,296	1,196	
	휘발유	771	650	796	1,248	1,073	
무기질비료 가격(농협)(원/톤)		505,900	545,900	567,734	1,186,932	901,550	농협 판매가격
배합사료 가격(농협)(원/kg)		472.7	479.3	525.3	645.2	669.9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원/kwh)		47.7	48.4	45.9	56.9	75.1	각 년도별 전력 판매액/사용량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6) '23년도에 산업용 등 요금은 21.1원/kWh 인상하였으나, 농사용은 3년간 분할 적용 중('23년 8.2 원, '24년 6.5, '25년 6.4)임.

또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나타내는 ‘농가구입가격지수⁷⁾’는 2023년 120.4로 2020년(100) 대비 20.4% 상승하였는데, 특히 사료·비료·농약·기계 등 구매와 관련한 ‘재료비가격지수’는 41.4%로 급등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지수	94.3	93.6	95.1	96.6	98.1	100.0	105.0	120.1	120.4
가계용품	94.3	95.5	97.4	98.6	98.9	100.0	102.5	107.4	111.2
재료비	98.2	93.0	91.6	91.1	93.9	100.0	108.4	145.8	141.4
노무비	80.5	83.8	87.6	92.4	96.3	100.0	108.9	122.9	132.1
경비	96.8	90.9	94.9	99.4	103.2	100.0	107.3	133.1	127.3
자산구입비	88.3	94.3	96.6	98.6	99.3	100.0	103.4	99.1	98.2

※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10.1% 늘어난 5,082만 8,000원으로 집계되었음.

농업소득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농업경영비의 꾸준한 증가로 연 1,00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

항목	'19	'20	'21	'22	'23	증감	증감률
농가소득	41,182	45,029	47,759	46,153	50,828	4,675	10.1%
○ 농업소득	10,261	11,820	12,961	9,485	11,143	1,658	17.5%
- 농업총수입	34,436	36,033	37,190	34,604	37,922	3,318	9.6%

7) 농업경영체의 가계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의 2020년 기준(2020=100)의 가격지수

항목	'19	'20	'21	'22	'23	증감	증감률
* 농작물수입	23,299	24,534	25,997	24,986	27,557	2,571	10.3%
* 축산수입	10,478	10,434	10,806	9,153	9,577	424	4.6%
* 농업잡수입	659	1,064	387	465	789	324	69.8%
- 농업경영비	24,175	24,212	24,229	25,119	26,779	1,660	6.6%
○ 농외소득	17,327	16,608	17,884	19,202	19,999	797	4.2%
- 겸업소득	5,828	4,930	5,507	6,296	6,767	471	7.5%
- 사업외소득	11,499	11,679	12,376	12,906	13,232	326	2.5%
○ 이전소득	11,230	14,263	14,809	15,245	17,188	1,943	12.7%
○ 비경상소득	2,364	2,337	2,105	2,221	2,497	276	12.4%

※ 자료: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또한, 경영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2023년 기준 농가의 자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등 농가 관련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음.

[농가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원)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자산	529,455	565,622	585,676	616,467	608,043	△8,424	△1.4%
○ 고정자산	451,987	484,985	498,298	528,665	516,289	△12,376	△2.3%
○ 유동자산	77,469	80,638	87,377	87,802	91,754	3,952	4.5%
부채	35,718	37,589	36,592	35,022	41,581	6,559	18.7%
○ 농업용	14,506	14,510	13,646	12,476	15,735	3,259	26.1%
○ 가계용	11,138	12,183	11,650	11,397	11,568	171	1.5%
○ 겸업·기타용	10,074	10,896	11,297	11,149	14,278	3,129	28.1%

※ 자료: 통계청

제정안은 사료·비료·농약 등이나 농업용 유류 등의 가격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농가 전반이 직면한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정부의 적극적

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또는 ‘최저 생산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농식품부의 의견과 같이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투입재 보조금은 WTO 협정상⁸⁾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감축대상 보조금⁹⁾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원 한도¹⁰⁾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

개정안에 따라 비료·사료·유류·전기료 등의 인상차액 지원을 법제화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정부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발생 시 감축대상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임.

이에 따라 정부도 WTO 협정상 규제를 받는 생산·경영비용 등에 대한 연례적인 보조방식을 취하기보다 농업직불제 등 소득 안정 지원 방식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¹¹⁾해 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부속서 1 가 中, ‘농업에 관한 협정’

9) 감축대상 보조금(AMS):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 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 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10) WTO에는 사업 예산이 아닌 당해연도 실집행액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WTO 국내보조 분류에 따른 ‘16~’20년 통보 현황(국내보조 실적은 ‘20년까지 통보됨)을 살펴보면, 2017년에 쌀 소득변동직불금 1조 4,898억원을 감축대상보조(AMS)로 통보한 바 있음.

11) 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은 2022년 2조 3,609만원에서 2023년 2조7,268만원, 2024년 2조 8, 7018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둘째, 농식품부가 추계한 농자재 등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적게는 2조 8,751억원에서 많게는 9조 6,374억원의 비용이 소요(연평균 각각 5,750억원, 1조 9,275억원)될 것으로 예상됨.

한정된 농림식품 분야 재원을 감안할 때 농가경영안정과 다른 농림식품 부문 예산(양곡관리, 농업신산업육성,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축산업진흥 등)에 배분되어야 하는 재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	프로그램	23년 예산	24년 예산
[총계]		17,357,345	18,339,237
농업·농촌	[계]	16,472,628	17,445,371
[101]농업·농촌	[1000]농가경영안정	4,789,816	5,032,916
	[1100]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1,155,378	1,625,914
	[2100]양곡관리	2,375,907	2,809,888
	[2200]농업신산업육성	592,163	408,737
	[3000]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757,653	1,728,153
	[3700]축산업진흥	1,040,975	991,934
	[3900]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306,127	347,274
	[4000]농업생산기반정비	1,910,972	1,931,595
	[4100]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1,577,256	1,493,085
	[5000]국제협력협상	127,930	200,327
	[6000]농산물품질관리	93,841	96,586
	[6200]농림축산검역검사	135,304	129,804
	[6400]종자관리	116,717	123,973
	[6500]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4,216	4,387
	[7000]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488,373	520,798
식품업	[계]	884,717	893,866
[104]식품업	[2800]식품외식산업육성	884,717	893,866

※ 자료: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제출자료('24.8.16)

셋째, 현재도 농식품부 등 정부는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비료관리법」, 「축산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예산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조세감면, 농사용전력 판매 단가 인상 완화¹²⁾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개요 >

- ◆ 목적: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용 유류 구입가격에 포함된 모든 세액에 대해 면세 적용('86.3.1.~)
-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 면제 세금(5종): 교통세·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세
- ◆ 면세 유종(6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트랙터·콤바인 등 42개 기종

제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해 보임.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주요내용	법적근거	'24 예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비료관리법」 제7조	28,815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 저리 융자 지원	「축산법」 제3조	300,000
농업자금이차보전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31,730
농업자금이차보전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20,834

12)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사용전력은 다른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23년도에 산업용 등 요금은 21.1원/kWh 인상하였으나, 농사용은 3년간 분할 적용 중('23년 8.2원, '24년 6.5, '25년 6.4)임.

세부사업(내역사업)	주요내용	법적근거	'24 예산
시설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원 추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6,97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재구성

따라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의무 지원의 법제화 필요성과 감축대상 보조금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농림식품 분야 재원 배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하고자 함.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등

5건의 제정안 제1조는 모두 해당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위기 등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제정안의 목적 조항을 살펴보면, 세부적 표현은 다르나 농가의 경영비용(생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농산물의 생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익적 가치 등 보전	농업인 생산비 부담 완화로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 및 경영안정	농자재 및 농업기계 비용 부담 완화로 농업인 경영안정에 기여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 생활 및 농산물 생산 안정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보장

한편, 5건의 제정안에서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관한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를 따르고 있음.

또한, 5건의 제정안은 모두 ‘필수농자재’를 정의하고 있는데 필수농자재의 범위는 제정안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문대림의원안의 경우 ‘농업에너지비용’과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한규의원안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각각을 살펴보면, 문대림의원안은 비료 및 사료를, 윤준병의원안은 농축산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비료, 사료,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자재를, 김한규의원안은 농축산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농자재로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을, 어기구의원안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비료(퇴비), 사료, 농약, 유류, 비닐 및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영농자재를, 이개호의원안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비료(퇴비), 사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및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농자재를 ‘필수농자재’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문대림의원안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전기요금 및 유류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농업에너지비용’으로,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이 일정 기준(시행령으로 정함) 이상으로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김한규 의원안은 농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필수농자재”란 다음 각 목의 농자재를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4. “농업에너지비용”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농약·비료·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자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의 농자재를 말한다. 3. “농업기계”란 농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대통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퇴비,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및 제8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와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전기요금 및 유류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 경영위기”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정안에 목적 및 정의 조항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 조치로, 이중 정의 조항은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5건의 제정안은 필수농자재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문대림의원안의 범위가 가장 좁고, 여기구·이개호의원안의 범위가 가장 넓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농자재의 범위에 따라 실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제정안별 필수농자재 정의 규정 비교]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	농축산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비료, 사료	비료, 사료	-	비료(퇴비), 사료	비료(퇴비), 사료
-	농약	-	농약	농약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	-	-	유류, 비닐,	농업용 유류, 비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자재	필수농자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농자재	필수농자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영농자재	필수농자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농자재

참고로, 현재 농자재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¹³⁾에서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을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지칭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¹⁴⁾은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사료 등을 농업 기자재로 보고 있음.

제정안의 입법 시에 필수농자재의 범위, 농업에너지비용과 농업기계에 대한 정의 포함 여부는 농산물의 생산에 필수 요소인지 여부와 실제 지원 시 재정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후략)

나.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각 제정안의 지원품목에는 모두 필수농자재가 포함됨.

이에 더하여 문대림의원안은 ‘농업에너지비용’을, 김한규 의원안은 ‘농업기계’를 제정안에 따른 지원품목으로 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7조(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유류비 등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농업에너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품목,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이하 “필수농자재 지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는 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에 따를 경우 255만 4,935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규정하고 있는 문대림·김한규의원안에 따를 경우 182만 2,483명(2023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의 수까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지원조건으로 문대림·김한규·이개호의원안은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급등) 시를, 윤준병·여기구의원안은 필수농자재 품목별로 직전 3개년 평균가격보다 당해연도 가격 상승 시로 정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문대림의원안은 가격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윤준병의원안은 가격 인상액의 70% 이상을, 김한규의원안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여기구의원안은 가격 인상액의 50%를, 이개호의원안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제정안별 지원대상 등 범위 비교]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인+농업법인) 1,822,483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2,554,935명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1,822,483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2,554,935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업인 추산 불가
지원 품목	◆필수농자재 - 비료, 사료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 는 농자재 ◆농업에너지비용	◆필수농자재 - 농약, 비료, 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자재	◆필수농자재 - 농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심의 위 심의를 거쳐 선정 ◆농업기계	◆필수농자재 - 비료, 퇴비, 유류, 비닐, 농약, 사료 - 농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품목	◆필수농자재 - 비료, 퇴비, 유류, 비닐, 농약, 사료 - 필수농자재심의위 에서 정한 품목
지원 조건	일정 가격 이상 상승(일정 가격은 시행령으로 규정)	품목별로 직전 3 개년 평균가격보 다 당해연도 가 격 상승	가격 급등(세부내용 은 시행령으로 규정)	품목별로 직전 3 개년 평균가격보 다 당해연도 가 격 상승	가격 급등(세부내용 은 시행령으로 규정)
지원 기준	가격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	가격 인상액의 100분의 70 이상	필수농자재는 위원회 심의로	가격 인상액의 100분의 50	필수농자재심의 위원회 심의로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	*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정, 농업기계는 시행령으로 규정	*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정

참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식품부 소요예산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문대림의원안 3조 1,976억원, 윤준병의원안 9조 6,374억 원, 김한규의원안 2조 8,751억원, 여기구의원안 6조 8,580억원, 이개호의원안 3조 7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됨.

[제정안별 재정소요액]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예상 소요액	3조 1,976억원	9조 6,374억원	2조 8,751억원	6조 8,580억원	3조 755억원

제정안의 핵심내용인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등은 5건 모두 각각 상이하므로 제정안 입법 시에 지원 필요성,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그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5건의 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김한규·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등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윤준병·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개호의원안은 제4조에서 농업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경우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정안에서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필수농자재의 지원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 및 노력을 유도하여 법률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각 제정안에서 3건은 재원 마련 노력을, 2건은 재원 마련 의무를 두고 있는 차이가 있음.

한편, 5건의 제정안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정안과 다른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5건 모두 “다른 법률¹⁵⁾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제정안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15)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필수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원회의 설치

윤준병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및 필수농자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김한규·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김한규·어기구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개호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후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문대림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5조(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①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2.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에 관한 사항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및 지원한도 3.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2.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 7명 3. 농협중앙회 소속 임

문대림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직원 1명 4. 농업 관련 학계 3명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제정안의 위원회는 심의기관인 위원회로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심의위원회 비교]

구분	문대림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명칭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비용 지원 사항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금액 및 한도 등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	지원품목, 금액, 한도,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원은 다음 인사 중 농식품부 장관이 위촉 1. 농식품부 및 농진청 공무원 각1명 2.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대표 7명 3. 농협중앙회 임직원 1명 4. 농업 관련 학계 3명 5. 위원장이 인정하는 인사 1명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¹⁶⁾에서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¹⁷⁾를 활용하거나 해당 심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요 > —

- ▶ 설치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주요 기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주요정책 심의
- ▶ 구성 현황: 18명
 - * 대학·연구기관·단체 7명,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 ※ 분과위원회는 미구성

개정안을 수용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개호의원안과 같이 위

-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회 구성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특정 분야의 대표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마.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문대림·윤준병·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문대림의원안의 경우 농업에너지비용에 관한 실태조사 포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문대림·윤준병의원안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부수적으로는 실태조사 등을 위한 타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수집된 자료·정보의 제3자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6조(농업경영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이하 “경영위기”라 한다)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과 농업에너지비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위기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비	제7조(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 시스템(이하 “정보시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제정안에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을 규정한 것은 필수농자재 등 가격의 변동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수농자재 등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또한,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 등도 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사료관리법」¹⁸⁾, 「농약관리법」¹⁹⁾, 「농업기계화촉진법」²⁰⁾ 등에 따라 사료관리정보시스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기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시스템별 비교]

구분	사료관리시스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기계 시스템
개요	사료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모든 농약의 구매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사료관리법 제27조의2	농약관리법 제23조의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3

18) 「사료관리법」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9) 「농약관리법」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품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운영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요 기능	지자체·농관원 등에서 수거한 사료 시료의 안전성 검사 접수 및 검정 결과 입력 기능	영업 등록·신고 및 판매·구매 정보관리, 농약·원제 등록, 등록 취소 농약 공표 및 회수·폐기 등 정보 제공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대상으로 제원신고, 신제품 판매, 중고거래, 폐기신고, 재활용중고부품관리, 재활용업자 지정 관리 등

바.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조세의 감면 등

문대림의원안은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인건비, 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 등의 지원과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조세 감면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제8조(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건비 지원 2.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3.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4. 그 밖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활동에 수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융자·보조
제1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는 문대림의원안의 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 만큼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수농자재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각각의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인건비·고용보조금 등 지원(안 제9조제1호 및 제10조)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23.2.15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²¹⁾ 등을 통해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직접 보조할 경우 시장에서 고임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① 저탄소 농자재 우대(안 제8조), ②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안 제10조), ③ 재생에너지 설비 및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의 보조(안 제9조제2호·제3호) 등에 관하여는 현재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 별도로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①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저탄소 농자재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자구로 의미를 추정하면 탄소(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농업용 자재라는 의미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농식품부가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²²⁾ 비용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②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업경영체 교육 지원 규정²³⁾이 마련되어 있음

22) 논물관리, 바이오차,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사용 등

- ♦ **(바이오차)** Biomass와 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소재로, 토양 등에서 100년이상 탄소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유기탄소 형태를 유지하는 고체탄화 물질
 - 토양개량제(생산성 증가, 화학비료 및 물사용 감소), 사료첨가제(가축면역, 소화기능 개선), 축사 깔짚(악취 저감) 등으로 활용 가능
- ♦ **(저메탄사료)** 메탄저감제를 가축의 성장단계에 따른 급여량에 맞게 첨가하여 제조된 사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 제7호)
 - 단,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육기간 단축 등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사료는 저메탄사료에 포함 가능
- ♦ **(질소저감사료)**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 제8호)
 - 단백질을 구성하는 질소와 탄소 감축으로 분뇨악취(NH₃) 및 온실가스(CH₄, N₂O) 감축

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

에 따라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경영체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원²⁴⁾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③ 재생에너지 설비 및 스마트농업 설비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²⁵⁾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제정안에서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24) <경영체 역량강화 컨설팅>

◆ 지원대상 및 한도

- (대상) 개별(농업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한도) 법인 30백만원(국고 9백만원), 개별 10백만원(국고 3백만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역량진단 등을 통한 기반조성, 경영역량 강화, 지속성장을 위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최대 3년)
- * 1단계 기초컨설팅 + 2단계 심화컨설팅(3~6개월 이내 수행계획서 작성)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및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 (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 (지원내용)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

- (목적)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구축 및 데이터 기반 고효율 디지털 농업 실현
- (지원내용) 스마트팜 온실신축, 시설보급(ICT 시설·장비,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현대화) 및 컨설팅

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한정²⁶⁾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조세 감면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후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사.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각 제정안은 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필수농자재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이개호의원안은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해당 비용의 지원 절차 또는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윤준병·김한규·어기구의원안은 지급신청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는 한편, 필수농자재 등의 구입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데,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7조(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제7조(지급신청) 필수농자재 구입비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비(이하 “농업기계 구입비”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	제6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의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⑤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지급신청·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	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필 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청심의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회) ① 제9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회(이하 “이의신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의신청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대 립 의 원 안	윤 준 병 의 원 안	김 한 규 의 원 안	어 기 구 의 원 안	이 개 호 의 원 안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이나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 및 필수농자재 지원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농업인단체의 대표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⑥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등의 이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비교]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신청 신청절차, 방법 등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함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신청 신청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신청 신청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의 신청	-	지원 제외 농업인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 농식품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보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제외 농업인은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	지원 제외 농업인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 농식품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보	-

다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행안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 농식품부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²⁷⁾에 따

2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민원조정위원회 개요 > —

- ▶ **설치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
 - ▶ **심의 사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재심의 등
 - ▶ **구성 현황:** 7명
 - 내부위원(3) : 정책기획관(위원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 외부위원(4)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 * 법률전문가 2인, 행정전문가 2인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환수 및 중복지원 제한

윤준병·김한규·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필수농자재 등 구입비 지원금의 환수 및 중복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먼저, 김한규·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필수농자재 등 구입비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준병의원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외에도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윤준병·김한규·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문대림의원안에서는 환수 및 중복제한 규정이 없고 이개호의원안은 점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11조(환수)	제9조(환수)	제10조(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먼저,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농업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지원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이 경우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환수할 수 있는 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임.

다음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관리·집행을 위한 취지로 이해됨.

[환수 및 중복지원 제한 등 비교]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점검					농식품부장관이 부정 지원사례 방지를 위해 점검
환수 사유		❶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❷ 목적외 사용 ❸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제한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가능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가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가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가능

참고로,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7개 기초지자체에서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지원 실적은 미미한 편이고²⁸⁾, 최근 공주시를 시작(23.10.4)으로 총 9개 지자체(기초 8, 광역 1)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원 실적은 없음.

28) 서산시 ('08~'21) 2억 2,800만 원을, 당진시는 ('18~'20) 4,4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음.

[조례 제정 지자체 및 지원 기준]²⁹⁾

구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
지자체	공주, 고흥, 당진, 서산 , 이천, 임실, 전북도, 진천, 군산 (9개 / 기초 8, 광역 1)	홍성, 함안, 서산 , 무안, 아산, 태안, 당진 (7개 기초 지자체)
지원 항목	비료, 퇴비,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대상 작물	-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쪽파
지원 기준	대부분 직전 3개년간 비료·퇴비·사료·유류·농약 등 평균가격 대비 당해연도 가격 인상분의 50%, 100만원 한도	대상 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하락하거나, 농식품부가 농안기금으로 구매·폐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200~500만원 한도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료관리법」, 「축산법」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사업들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는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 보임.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주요내용	법적근거	'24 예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비료관리법」 제7조	28,815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 저리 융자 지원	「축산법」 제3조	300,000
농업자금이차보전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31,730
농업자금이차보전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20,834
시설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원 추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6,97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재작성

29) 지자체별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자.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5건의 제정안은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문대림·윤준병·김한규의원안은 각각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먼저, 문대림·윤준병·어기구·이개호의원안은 권한의 위임·위탁을 모두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농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김한규의원안은 권한의 위임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문대림·윤준병·김한규의원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문대림·윤준병의원안 실태조사 등으로 수집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은 법률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함.

또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 입법례³⁰⁾에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

다만, 제3자에 대한 제공·누설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실태조사 등으로 수집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등으로 수집된 자료 등은 통상 공개가 가능하고, 「통계법」³¹⁾에 따르더라도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발표 전’에 제공·누설하는 경우나 ‘개인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³²⁾.

30)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통계법」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2) 다만, 현재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일부 존재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차. 부칙

5건의 제정안은 부칙으로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윤준병·김한규·어기구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이개호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문대림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이후 집행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보다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신설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③(생략)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 고 자 료

자료 1 지자체별 조례 세부 내용

□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지원 실적 無)

구분 (제정일)	필수농자재	지원기준
공주시 (23.10.4)	-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 필수농자재심의위 선정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된 가격의 50%, 상한액 100만원
고흥군 (23.12.27)	-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 고흥군 필수농자재심의위 선정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된 가격의 50%, 상한액 100만원
당진시 (24.2.15)	-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 필수농자재심의위에서 선정한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된 가격의 50%, 상한액 100만원
군산시 (24.2.20)	군산시장이 선정한 품목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함
서산시 (24.3.25)	- 유·무기질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비닐, 사료 - 필수농자재심의위에서 선정한 품목	해당 연도에 구입한 필수농자재 가격의 5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이천시 (24.4.4)	-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 필수농자재심의위에서 선정한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된 가격의 50%, 상한액 100만원
임실군 (24.4.24)	필수농자재심의위에서 선정한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된 가격의 50%, 상한액 100만원
전북도 (24.5.31)	전북도지사가 필수농자재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	전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진천군 (24.6.28)	필수농자재심의위에서 선정한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된 가격의 50%, 상한액 100만원
부여군 (24.7.12)	필수농자재심의위에서 선정한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된 가격의 50%, 상한액 100만원
아산시 (24.7.15)	-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 필수농자재심의위에서 선정한 품목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10%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

구분 (제정일)	조례명	지원 내용	농가 기준 및 지원한도	지원 실적
서산시 (08.2.11)	•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 • (지원기준) ①도매시장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최저 생산비 이하로 결정되거나 ②농식품부에서 농안기금 사업으로 수매폐기하기로 결정할 때	• (지원농가) 1품목당 990㎡ 이상 재배 농가 - 서산시장과 계약 후 파종 - 자기부담으로 출하성수기 전에 농산물 폐기한 농가 • (지원한도) 1품목 1기작에 한하여 200만원 이하	228 백만원 (‘08~21)
창녕군 (08.7.7)	•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김장용가을무, 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 (지원기준) 도매시장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결정	• (지원농가) 1품목당 990㎡ 이상 재배 농가 - 군수와 계약 후 파종 - 자기부담으로 농산물 폐기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	-
무안군 (11.5.16)	•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조생양파 • (지원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2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	• (지원농가) 330㎡이상 재배 농가 • (지원한도) 재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농가당 최대 6,600㎡이내	-
당진시 (13.5.15)	•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김장용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고추, 마늘 • (지원기준) ①도매시장가격이 6일이상 계속하여 최저 생산비 이하로 결정되거나 ②농식품부에서 농안기금 사업으로 수매폐기하기로 결정할 때	• (지원농가) 1품목당 990㎡ 이상 재배 농가 - 당진시장과 계약 후 파종 - 자기부담으로 출하성수기 전에 농산물 폐기한 농가 • (지원한도) 1품목 1기작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	44 백만원 (‘18~20)
홍성군 (13.7.25)	•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가을배추, 가을무 • (지원기준) ①도매시장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최저 생산비 이하로 결정되거나 ②농식품부에서 농안기금 사업으로 수매폐기하기로 결정할 때	• (지원농가) 1품목당 990㎡이상 3,300㎡미만 재배 농가 - 자기부담으로 출하성수기 전에 농산물 폐기한 농가 • (지원한도) 200만원 이내	-
함안군 (15.2.16)	• 함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봄·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마늘, 감자 • (지원기준) ①도매시장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최저 생산비 이하로 결정되거나 ②농식품부에서 농안기금 사업으로 수매폐기하기로 결정할 때	• (지원농가) 1품목당 991㎡ 이상 재배 농가 - 군수와 계약 후 파종 - 자기부담으로 출하성수기 전에 농산물 폐기한 농가 • (지원한도) 1품목 1기작에 한하여, 200만원 이하	-
아산시 (18.1.1)	•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 • (지원기준) ①도매시장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최저 생산비 이하로 결정되거나 ②농식품부에서 농안기금 사업으로 수매폐기하기로 결정할 때	• (지원농가) 1,000㎡이상 재배 농가 - 자기부담으로 출하성수 기간에 폐기한 농가 • (지원한도) 1품목 1기작에 한하여, 200만원 이하	-
태안군 (19.11.8)	•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최저생산비)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 (품목) 최저생산비지원 심의위에서 선정된 품목 • (지원기준) 도매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보다 20%이상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지원	• (지원농가) 1,000㎡이상 5,000㎡이하 재배 농가 - 군수와 계약 후 파종 • (지원한도) 1품목 1기작에 한하여, 200만원 이하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